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178 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김위상·김미애·김은혜

임이자 · 이종배 · 서범수

김소희 · 김선교 · 박충권
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, 사업장의 여건이나 조직내 분위기,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.

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을 다음 연도로 저축·이월하 여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의 저축제도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의2 신설 등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
- 2. 근로자가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저축을 신청하는 경우

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2조의2(연차휴가의 저축)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중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저축 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를 그 다음 연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저축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저축한 연차휴가는 최대 5년의 기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 연차휴가는 소멸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저축의 상한, 신청절차 및 사용방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⑥	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⑦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	7
따른 휴가는 1년간(계속하여	
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	
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	
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	
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행사하	
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 <u>다만,</u>	·. <u>다만, 다음</u>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	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	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u>하다.</u>	
<u><신 설></u>	1.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
	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
	한 경우
<u><신 설></u>	2. 근로자가 제62조의2제1항에
	따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
	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
	가 저축을 신청하는 경우
<u><신 설></u>	제62조의2(연차휴가의 저축) ①
	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
	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
	차 유급휴가 중 근로자가 해당

연도에 저축하여 사용하지 아 니한 휴가를 그 다음 연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저 축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저축한 연차휴가는 최대 5 년의 기간 안에 사용하여야 하 며,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 연차 휴가는 소멸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저축의 상한, 신청절차 및 사용방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한다.